

의안번호	제206호
의결연월일	2023. 12. 1.

-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 예산군수
 -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 행정복지위원회
 - 상 정 일 자 : 2023. 12. 1.
- 제296회 예산군의의회(정례회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기획실장 : 이덕효]

가. 제안이유

-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갑질 행위 근절대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갑질 피해 신고·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실태조사,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갑질 행위자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신고자 등 보호·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5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김영순)

- 본 조례안은 예산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
-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.
- 주요내용
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, 갑질 피해 신고·지원센터의 운영, 신고자 보호, 갑질 행위의 은폐시 행위자 및 행위자의 관리자·상급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음
-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,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